

의안번호	2205045
의 퇴 인	이인영 의원
회 답 일	2024. 11. 8.
추 계 번호	24F46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품대금 조정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8조의3제4항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납품대금 조정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상생협력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납품대금조정협 의제도¹⁾에 따라 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경우, 해당 조정 금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특례 신설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8조의3제4항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 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납품대금 조정금액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법인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재정수입 감소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납품대금 조정 규모를 전망해야 하지만 관련 실적통계가 부재하여 추계가 불가능함
 - 중소벤처기업부에 확인한 결과, 납품대금조정협의 절차는 수탁·위탁기업 간 내부적으로 이루어져 중기부로 조정협의 신청 및 협의 실적을 신고할 의무가 없어, 전체 조정 현황 및 납품단가 인상액 규모 등에 관한 자료가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부재함

- 따라서 향후 개정안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함
- 참고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개요)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 하도급법에도 유사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가 존재하나 기업규모·매출·업종 제한이 존재하는 반면, 상생협력법상 제도는 대상 범위가 포괄적
 - 납품대금조정협의는 직접 또는 협동조합¹⁾을 통한 방식 중 선택 가능
 - 조정 개시 후 10일 이내에 조정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하여 중기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현황 자료를 관리 중임
 - － 최근 5년간 납품대금조정협의를 통한 조정신청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납품대금관련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¹⁾	계
접수	2	3	4	4	1	14
조정성립	2	2	1	—	—	5
조정불성립	—	1	2	3	—	6
조정중단	—	—	1	1	1	3
진행	—	—	—	—	—	—

주: 1) 2024년은 9월 말까지 집계 현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납품대금 조정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1)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조합, 중소기업중앙회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836	shjang@assembly.go.kr